

2026. 10. 13.(화)
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026-117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6. 10. 13.
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회

1. 주 문
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위원회 구성

- (법적근거)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- (구성인원) 13명(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)
 -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11명
- (구성시기)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
- (활동기간) 구성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(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)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 선출

나. 감사 대상사무

-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국가 및 시·도의 위임사무

3. 관련법규: 붙임

-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
-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

【붙임】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□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2조(감사)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.